

# ANG Technology

## 책임조달 및 분쟁광물

### 관리 정책

제정일자 | 2026. 04. 01

개정일자 | 2026. 04. 01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03
제 2 조	적용범위	03
제 3 조	관련 정책	03

## 제 2 장 책임조달 원칙

제 4 조	책임조달 원칙	03, 04
제 5 조	관리 대상 물질	04, 05

## 제 3 장 책임조달 관리 절차

제 6 조	대상 협력사 선정	05
제 7 조	협력사 확인 요청	05, 06
제 8 조	검토 및 기록 관리	06
제 9 조	사후 관리	06
제 10 조	협력사에 대한 요청사항	06

## 제 4 장 이행 및 감독

제 11 조	운영 및 교육	06, 07
제 12 조	보고	07
제 13 조	위반사항 보고 및 고충 처리	07

## 부칙

제 1 조	시행일	07
제 2 조	담당부서	07
제 3 조	개정	08
제 4 조	개정이력	08

##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주식회사 에이앤지테크놀로지(이하 "회사"라 한다)는 자동차 시험설비 제조업체로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부품 및 소재를 외부 협력사로부터 구매한다. 회사는 구매하는 부품(전자부품, 기계부품 등)에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이나 분쟁광물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직접 제련하거나 원자재를 채굴하는 회사는 아니나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조달을 실천하고자 본 정책을 제정하였다. 회사는 협력사에게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구매 의사결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본 정책은 회사가 현재 이행 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관리 수준을 높여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범위

본 정책은 회사의 책임 있는 조달에 관한 약속, 원칙 및 지향하는 기준을 규정하며, 회사에 부품 및 자재를 공급하는 모든 협력사는 본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본 정책의 적용대상은 분쟁광물(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 및 배터리 광물(코발트, 리튬, 니켈, 천연 흑연 등), 알루미늄을 포함한 책임광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부품 및 원자재로 한다. 다만, 단순 소모품(장갑, 케이블타이, 볼트·너트류 등) 및 노무·용역 서비스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 제 3 조 관련 정책

본 정책에 명시된 책임 있는 조달에 대한 회사의 약속은 「협력사 행동규범」 및 「협력업체 ESG 절차서」를 통해 뒷받침된다. 「협력업체 ESG 절차서」는 협력사 선정·평가·시정조치 전반의 ESG 관리 절차를 규정하며,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의 관리 기준을 포함한다. 「협력사 행동규범 서명서」는 협력사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 행동 원칙 및 서명 의무를 담고 있으며, 노동·인권·환경·윤리 기준을 포함한다. 또한 회사는 「ESG 이행현황 확인서」를 통해 협력사의 ESG 이행 수준을 환경(E)·사회(S)·지배구조(G) 20개 항목으로 평가하며, 구매계약서 ESG 조항을 통해 계약 체결 시 행동규범 준수 의무, 실사 협조 및 계약 해지 기준을 명시한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에 걸친 협력사 관리 기준 및 절차는 「협력사 행동규범」에서 규정하며, 본 정책은 책임조달 및 분쟁광물 관리에 특화된 문서로서 두 문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된다.

## 제 2 장 책임조달 원칙

### 제 4 조 책임조달 원칙

회사는 실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핵심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한다. ESG 전반에 대한 세부 원칙은 「협력사 행동규범」에 따른다.

- 1. 환경적 책임:** 구매 부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RoHS·REACH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협력사에게도 유해물질 저감 및 환경법규 준수를 요청하며, 환경 개선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 2. 사회적 책임:** 공급망 내 강제노동·아동노동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협력사 행동규범」을 통해 노동자의 기본 권리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요청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지향한다.
- 3. 윤리적 책임:** 모든 조달 과정에서 부패·뇌물 없는 투명한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수출제한·경제제재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하며, 제재 대상 국가·기관과의 거래를 금지한다. 허위 정보 제출, 고의적 은폐 등 비윤리적 행위는 거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협력사에게도 동일한 윤리 기준을 요청한다.
- 4. 인지와 확인:** 구매 부품에 분쟁광물 또는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주요 협력사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한다. 이는 협력사를 감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함께 높여가기 위한 협력적 접근이다.
- 5. 단계적 실천:** 모든 협력사에 즉각적이고 완벽한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다. 협력사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관리 수준을 높여가며, 어려움이 있는 협력사에게는 정보 및 가이드를 제공하여 함께 개선해 나간다.
- 6. 협력 우선:** 분쟁광물 또는 유해물질 관련 문제가 확인된 경우 즉각적인 거래 중단보다 개선 기회를 먼저 부여한다. 다만, 고의적인 허위 정보 제공 또는 반복적인 미이행 시에는 거래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

## 제 5 조 관리 대상 물질

회사는 공급망 내 원자재 및 구매 부품에 포함될 수 있는 물질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인지하고 관리한다.

- 1. 적극 관리 항목 (확인서 수집 등 실질적 관리):** 회사의 구매 품목과 직접 관련이 있어 협력사 확인서 수집 등 실질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항목이다.

구분	해당 물질	관리 방법
분쟁광물 (Conflict Minerals)	3TG: 주석(Sn)·탄탈럼(Ta)·텅스텐(W)·금(Au)	주요 협력사를 선정하여 미해당 확인서를 수집·보관하며, 단계적으로 대상 협력사를 확대한다
유해물질 (RoHS)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PBB, PBDE 등	주요 협력사를 선정하여 RoHS 선언서를 수집·보관하며, 단계적으로 대상 협력사를 확대한다
고위험물질 (REACH·SVHC)	SVHC (고위험성 후보물질) 목록 내 물질	주요 협력사를 선정하여 REACH 선언서를 수집·보관하며, 단계적으로 대상 협력사를 확대한다
알루미늄 (Aluminium)	알루미늄 명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박스, 알루미늄 패널 등	현재 원산지 확인 수준으로 관리하며, 단계적으로 재활용 원료 비율 확인을 추진한다

2. 인지·모니터링 항목 (현재 직접 해당 없으나 공급망 차원 인지): 현재 회사의 구매 품목과 직접 관련성은 낮으나, 공급망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인지하고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항목이다.

구분	해당 물질	인지 사유
책임광물 (Responsible Minerals)	리튬(Li), 코발트(Co), 니켈(Ni), 운모(Mica) 등	현재 회사 구매 품목과 직접 관련성은 낮으나 향후 고객사 요구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향 모니터링

3. 해당 없음 항목 (사업 특성상 현재 해당하지 않음): 현재 회사의 사업 특성(자동차 시험설비 제조)상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으로, 향후 사업 변화 시 재검토한다.

구분	해당 원자재	해당 없음 사유
EUDR 규제 원자재	고무, 목재, 팜유, 코코아, 커피, 콩, 쇠고기 등	EU 삼림벌채방지규정(EUDR) 대상 원자재로, 현재 회사의 구매 품목에 해당 원자재가 포함되지 않아 해당 없음으로 확인됨

\* 해당 없음 항목은 연 1회 또는 사업 변화 시 재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 제 3 장 책임조달 관리 절차

#### 제 6 조 대상 협력사 선정

회사는 책임 있는 조달을 위하여 다음 절차를 수행하며, 다수의 협력사와 거래하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 기반 접근 방식(Risk-based Approach)을 채택하고 주요 협력사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다. 관리본부 구매팀은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책임조달 관리 대상 협력사를 선정하며, 사업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1. 연간 매입금액 기준 상위 협력사
2. 전장부품·기계부품 등 분쟁광물·유해물질 포함 가능성이 높은 품목 납품업체
3. 관리본부 구매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협력사

#### 제 7 조 협력사 확인 요청

1. 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협력사에게 주요 품목 확인서(RoHS 선언서, REACH 선언서 등)의 제출을 요청한다.
2. 확인서 제출은 관리본부 구매팀 판단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3. 주요 품목 확인서를 별도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 RoHS가 포함된 CE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로

대체할 수 있다.

※ 모든 협력사에 대한 동시 일괄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주요 협력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제 8 조 검토 및 기록 관리

1. 제출된 확인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구매를 진행한다.
2. 기준 초과 또는 분쟁광물 출처 불명 시 협력사에 개선을 요청한다.
3. 확인서 및 검토 결과는 관리본부 구매팀에서 보관·관리한다.

## 제 9 조 사후 관리

1. 개선 요청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협력사의 대응 결과를 확인하며, 담당부서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2. 지속 미이행 시 구매부서장 검토 후 거래 중단 여부를 판단한다.
3. 고의적 허위 정보 제공 확인 시 즉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 제 10 조 협력사에 대한 요청사항

회사는 협력사에게 다음 사항을 요청하며, 이는 협력사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반성장 차원의 협력 요청이다.

1. 법규 준수: 사업장 소재 국가의 RoHS·REACH 등 관련 환경·안전 법규를 준수하며, 요청 시 RoHS·REACH 준수 확인서를 제출한다.
2. 정보 제공: 납품 부품에 분쟁광물(3TG) 포함 여부를 파악하고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유해물질 또는 분쟁광물 관련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통보한다.
3. 협조 의무: 회사의 책임조달 활동(확인서 제출, 서면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며, 허위 정보 제출은 거래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한다.

## 제 4 장 이행 및 감독

### 제 11 조 운영 및 교육

1. 본 정책의 운영 주관부서는 경영기획실 및 관리본부 구매팀이며, 연 1회 이행 현황을 검토한다.
2. 본 정책은 사업 환경 및 고객사 요구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3. 관리본부 구매팀 담당자는 본 정책의 내용을 숙지하고 구매 업무에 반영하며, 필요 시 협력사 대상 관련 정보 및 가이드 제공을 검토한다.

## 제 12 조 보고

책임조달 관련 주요 현황(확인서 수집 현황, 개선 요청 현황 등)은 연 1회 경영진에게 보고한다.

## 제 13 조 위반사항 보고 및 고충 처리

1. 회사는 책임조달과 관련된 우려 사항을 자유롭고 투명하게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모든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회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는 본 정책 위반 사항이나 책임조달 과정의 불법·비윤리적 문제에 대해 자유롭고 투명하게 제보할 수 있다.
2. 고충은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복금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여 제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선의로 문제를 제기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는다.
3. 접수된 사안은 기밀을 유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처리 결과는 제보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한다.

신고 채널	내용
ANG Technology 공식 홈페이지 - 외부 사이버 제보센터 (ESG 카테고리 → 사회 → 외부 사이버 제보센터) 주소: <a href="https://angtec.com/ko/esg/inquiry-main.php">https://angtec.com/ko/esg/inquiry-main.php</a>	책임조달 및 ESG 관련 위반 사항, 불공정·비윤리적 행위 등을 익명으로 제보,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로 보호되며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도 받지 않는다.
경영진 직접 보고	중대한 위반 사항 또는 담당부서 처리 불가 사안

## 부칙

### 제 1 조 시행일

본 책임조달 및 분쟁광물 관리 정책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국제 기준을 따른다.

### 제 2 조 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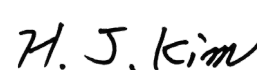
경영기획실, 관리본부 구매팀

### 제 3 조 개정

본 책임조달 및 분쟁광물 관리 정책을 개정할 경우에는 최고이사결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개정 내용은 전 임직원에게 즉시 공지한다. 본 정책은 최소 2년에 한 번씩 검토하며, 고객사 요구 또는 규제 변화 시 수시로 개정한다.

### 제 4 조 개정이력

회차	개정일	개정 내용
제 1 차	2026.04.01	최초 제정



(주) 에이앤지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형종**

